
 <b>교육부</b>		<b>보도자료</b> 2021. 1. 22. (금) 배포		
보도일	<b>배포 즉시</b>			
담당과	전문대학정책과	담당자	과 장 정윤경 (☎ 044-203-6411)	
			사무관 박치면 (☎ 044-203-6407)	
	전문대학지원과		주무관 박경신 (☎ 044-203-6403)	
			과 장 김 석 (☎ 044-203-6899)	
			사무관 장경호 (☎ 044-203-6458)	

## 교육부, 서해대학 학교폐쇄 명령

- ◆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불가능한 서해대학 폐쇄명령 처분
- ◆ 2021학년도 1학기 재적생 특별편입학 조치

- 교육부(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)는 2021년 1월 22일(금), 학교법인 군산기독교학원이 설치·경영하는 서해대학에 대해 고등교육법 제60조 및 제62조에 따라 청문 절차 등을 거쳐 대학 폐쇄명령(폐쇄일 2021.2.28.)을 내렸다.
  - 학교법인 군산기독교학원의 경우, 서해대학 외에 더 이상 설치·경영하는 학교가 없어 법인의 설립목적 달성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법인 해산명령도 함께 내렸다.
  - 대학 폐쇄명령 처분에 따른 후속 조치로, 학습권 보장을 위해 기존 재적생들의 2021학년도 1학기 특별편입학을 함께 추진한다.

### 《서해대학 폐쇄명령 처분》

- 교육부는 지난 2015년 전주지방검찰청 수사 결과에 따라 서해대학에 대해 교비 횡령액 보전 등 시정요구를 하였으며, 2020년 3회에 걸쳐 시정요구 및 학교폐쇄 계고\*를 하였으나 서해대학은 최근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.

\* 시정요구 및 폐쇄계고 : 1차(2020.9.18.~10.12.), 2차(2020.10.13.~11.3.), 3차(2020.11.4.~11.26.)

- 또한, 서해대학은 그동안 정원자율책정 기준 위반으로 인한 행정 처분 및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에 따른 재정지원제한 대학 지정 등 각종 행·재정 제재를 받아 왔으며,
- 학생 충원율\* 급감에 따른 등록금 수입 감소와 교비 횡령 및 교직원 임금 체불, 법정부담금 체납 등 심각한 재정악화로 교육의 질을 보장할 수 없어 대학 운영이 한계에 도달하였다.

\* 2020년 신입생 충원율 0%(신입생 모집 중단, 2019년 17.5%), 정원 내 재학생 충원율은 18.8%(2019년 39.8%)

- 교육부는 고등교육법 제62조에 따라 서해대학이 법령 위반 및 교육부장관의 시정명령을 3회 이상 미이행하고, 심각한 재정난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찾지 못해 향후 정상적인 학사운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, 청문 등의 절차\*를 거쳐 학교 폐쇄를 결정하게 되었다.

\* 폐쇄계고(2020.9.18.-11.26.) → 현지조사(2020.12.1.) → 행정예고(2020.12.18.-2021.1.8.) → 청문(2021.1.12.)  
 ※ (참고) 2000년 이후 전문대학 폐교현황(총 4교) : 성화대(2012, 강제폐쇄), 벽성대(2014, 강제폐쇄), 대구미래대(2018, 자진폐교), 동부산대(2020, 강제폐쇄)

- 또한, 서해대학 폐쇄 시 설치·경영하는 학교가 없어 법인의 설립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학교법인 군산기독교학원에 사립학교법 제47조에 따라 해산 명령을 함께 내렸다.
- 서해대학 폐쇄 후 학교법인 군산기독교학원의 재산은 청산인\*에 의해 채무 변제 등 청산 절차를 거치게 되며, 청산종결 신고 후 잔여 재산은 국고로 귀속된다.

\* 청산인의 직무 : 현존사무의 종결, 채권의 추심 및 채무의 변제, 잔여재산의 인도

## 《특별 편입학 조치》

- 서해대학의 폐쇄 명령에 따라, 인근 다른 대학으로 재적생 140명\*의 특별 편입학을 추진한다.

\* 2021년 2월 졸업예정자 180명을 제외한 재학생 47명, 휴학생 93명

- 우선, 전북지역의 **동일·유사학과(전공), 동일 학년**으로 특별 편입학을 추진하되, 해당 지역 대학에 편입 가능한 **동일·유사학과가 없거나 수용가능 인원이 부족할 경우, 편입학 대상 대학의 지역을 확대할 계획**이다.
- 편입학 대상 대학은 선발심사 기준, 선발학과 및 인원 등을 포함한 자체 특별 편입학 세부 추진계획 및 모집요강을 수립하여 한국사학진흥재단 및 편입 대학별 누리집에 공고할 예정이다.
  - 군 복무에 따른 휴학생의 경우, 국방부 협조를 얻어 개별부대로 특별 편입학을 안내하고, 기타 연락처 부재로 안내가 어려운 학생들에게는 행정안전부의 협조를 통해 법적 주소지로 안내한다.
  - 서해대학 폐쇄 이후, 학적부 관리 및 제증명 발급은 한국사학진흥재단에서 담당한다.
- 앞으로도 교육부는 학생들의 학습권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고, 고등교육기관이 **고등교육법 등 교육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양질의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도·감독할 계획**이다.

【붙임】 학교폐쇄 및 법인해산 관련 규정

## 붙임 학교폐쇄 및 법인해산 관련 규정

### □ 학교폐쇄 법정 요건(고등교육법 제62조)

#### 《고등교육법》

제62조(학교 등의 폐쇄) ① 교육부장관은 학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학교의 학교법인에 대하여 학교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.

1. 학교의 장이나 설립자·경영자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(過失)로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
2. 학교의 장이나 설립자·경영자가 같은 사유로 이 법 또는 그 밖의 교육 관계 법령에 따른 교육부장관의 명령을 3회 이상 위반한 경우
3. 휴가기간을 제외하고 계속하여 3개월 이상 수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

### □ 학교법인 해산 법정 요건(사립학교법 제47조)

#### 《사립학교법》

제47조(해산명령) ① 교육부장관은 학교법인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학교법인에 대하여 해산을 명할 수 있다.

1. 설립허가조건에 위반한 때
2.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한 때
-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법인의 해산명령은 다른 방법으로는 감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또는 관할청이 시정 지시한 후 6월이 경과하여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야 한다.